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4. 12. 10.(월) 09:30

「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바. 응급의료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적정한 집행,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4.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신속한 응급 처치가 요구되는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응급 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될 경우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이 응급의료기관과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 관련부서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